

6장. 부가세 납부세액 계산 및 납부, 신고절차

1) 국세기본법상 가산세

종 류	적 용 조 건	가 산 세 액
무신고 가산세 (*1)	일반무신고	납부세액×20%
	부정행위로 무신고	납부세액×40%
과소신고, 초과 환급신고가산세 (*2)	일반과소신고	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 등×10%
	부정과소신고	(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+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)×40%
납부불성실, 환급불성실가산세		미납부, 미달납부세액(또는 초과납부세액)×기간 (*3) ×3/10,000
대리납부불이행에 대한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 실가산세		미납세액×Min[3%+기간(*3)×3/10,000, 10%]

(\*1) 영세율 과세표준을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: 무신고 및 과소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 × 0.5%

(\*2)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50%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. 단,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.

(\*3) 미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경우: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자진납부일(또는 고지일)까지의 일수  
초과환급받은 경우: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(또는 고지일)까지의 일수

[예제1] 수출업을 영위하는 갑법인의 제2기 확정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.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경정에 따라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을 추징할 경우 가산세는 얼마인가?

(1)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100,000,000원 중 정해진 첨부서류를 제출한 과세표준은 80,000,000원이며, 나머지는 누락되었다.

(2)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2,500,000원을 단순한 계산상 착오로 공제하였다.

(3) 환급세액은 5,000,000원이며,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는 100일이다.

2)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

종 류	적 용 조 건	가 산 세 액
사업자 미등록 가산세	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	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1%
사업자허위등록 가산세	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명의로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될 때	사업개시일로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1%

종 류	적 용 조 건	가 산 세 액
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	지연발급: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 (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원칙: 공급일에 발급, 월합계세금 계산서 등의 경우 공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)	해당 공급가액의 1%
	기재불성실: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	
	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: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 가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 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	공급가액 × 법인사업자 (1%), 개인사업자(0.3%)
	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: 전송기한이 경과한 후 재화 또 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 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 는 경우	공급가액 × 법인사업자 (0.5%), 개인사업자 (0.1%)
	세금계산서 미발급: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,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공급일이 속하는 과 세기간 말의 다음달 10일까지 미발급하는 경우	해당 공급가액의 2% (단, 전자세금계산서 발 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 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(종이세금계산서) 발급 시 가산세부담은 공급가 액의 1%)
	가공발급: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	
	허위발급: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 급한 경우	
사업자가 아닌 경우: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 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 우		
미제출: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	미제출, 부실기재분 공 급가액의 1%	
기재불성실: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거래처별 등록번호, 공급가액의 전부 혹은 일부가 누락되거나 사실 과 다른 경우		
매출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	지연제출: 예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할 매출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로서 부실 기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함	지연제출분 공급가액의 0.5%

종 류	적 용 조 건	가 산 세 액
공급받은 사업자의 가산세	세금계산서 지연수취: 공급시기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경우로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	해당 공급가액의 1%
	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: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예정, 확정신고시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고, 경정시 사업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경우	
	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기재불성실: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있는 경우로서, 경정시 사업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경우	
	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 미제출: 신용카드 매출전표수령명세서를 예정, 확정신고시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고 경정시 사업자가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제출하여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경우	
	매입처별세금계산서 과대기재: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	
	가공수취: 재화,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	해당 공급가액의 2%
허위수취: 실제로 재화,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		
현금매출명세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	현금매출명세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	제출하지 아니한 수입금액의 1%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의 1%

[예제2] A법인은 해당연도 2월 10일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8월 11일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. 다음자료에 따라 A법인의 미등록가산세를 계산하라.

- (1) 2.10 ~ 3.31.의 공급가액: 100,000,000원
- (2) 4.1 ~ 6.30.의 공급가액: 300,000,000원
- (3) 7.1 ~ 8.10.의 공급가액: 120,000,000원
- (4) 8.11 ~ 9.30.의 공급가액: 50,000,000원
- (5) 10.1 ~ 12.31.의 공급가액: 400,000,000원

[예제3]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(주)가천의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계산하시오.

- (1) 국내제품 매출액 중 30,000,000원은 2011.5.2. 제품의 인도일이나 과실로 인해 세금계산서는 2011.6.25.에 작성하여 발급하였다.
- (2) 내국신용장에 따른 매출액 중 20,000,000원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.
- (3)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액 5,000,000원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는데, (주)가천은 주사업장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과세를 하는 사업자가 아니다
- (4) 사업상 증여한 제품의 시가 2,000,000원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.
- (5)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에 포함된 금액 중 4,000,000원(공급가액 40,000,000원)은 실제 재화의 공급일이 2011.4.5.이나, 세금계산서는 2011.6.30.에 발급받은 것이다.

[예제4] (주)가천은 제1기 예정신고기간 중에 공급한 매출가액 15,000,000원과 관련 매입세액 500,000원을 신고하지 못하여 이를 확정신고시 수정신고하고 관련 합계표를 제출하려고 한다. 이 경우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가산세의 합계액을 계산하면? (단, 세금계산서는 모두 적법하게 교부하거나 교부받았으며,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시 미납일수는 90일이다.)

[예제5] 다음은 일반과세자인 (주)가천의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자료이다.

- (1) 2011.10.1.~ 2011.12.31.까지의 공급가액은 300,000,000원이다.
  - (2) 2011.10.1.~ 2011.12.31.까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150,000,000원이다.
  - (3) 2011년 제2기 예정신고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고 2012.1.25. 확정신고시 이를 포함하고 신고하기로 하였다. 또한 예정신고시 미제출한 매입,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도 추가 제출하기로 하였다(부당과소신고는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한다).
    - 1) 국내판매분 중 공급가액 5,000,000원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신고누락하였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도 포함시키지 않았다.
    - 2) 국내판매분 중 공급가액 6,000,000원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신고하였으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.
    - 3) 원료구입액 2,000,000원(공급가액)의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기간에 수령하였으나, 신고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이 누락되었다.
    - 4) 장비구입액 4,000,000원(공급가액)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5,000,000원으로 기재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.
- 위 자료에 의하여 제2기 확정신고시 납부할 부가가치세 자진납부세액을 계산하시오. 단, 신고일은 2012.1.25.이다.

### 3)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

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가산세 중 일부가 중복적용될 경우 그 중복적용을 배제하고 있다.

- ① 사업자미등록(1%), 사업자 허위등록 가산세(1%)가 적용되는 경우  
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(1%),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(1%),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(0.5%)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②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중 공급가액의 2%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 
사업자 미등록(1%), 사업자 허위등록(1%),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(1%),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제출(0.5%),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(1%)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③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(1%)가 적용되는 경우  
세금계산서 부실기재가산세(1%)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④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(1%)가 적용되는 경우  
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가산세(1%), 지연전송 가산세(0.5%)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⑤ 예정신고분에 대하여 신고관련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, 환급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경  
확정신고와 관련된 신고관련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, 환급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  
다.